

**2015년도
주안3동 종합감사 결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감 사 실)

2015년도 주안3동 종합감사 실시결과

I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주안3동 주민센터

나. 감사범위 : 2012. 8월 ~ 2015. 2월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2. 감사기간 : 2015. 3. 17 ~ 3. 20 (4일간)

3.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3명

4. 구민감사관 참관 현황

- 성 명 : 고 재 춘

- 일 시 : 2015. 3. 17 (1일)

5. 중점 감사사항

가.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나.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 여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라. 각종업무(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추진실태 등

II 처 분 요 구

1. 총 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건/명)	현지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환급	기타			
14	6	8	3/77	1/50	2/27	-	-	-	

Ⅲ 주 요 지 적 사 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⑦제2항에 의하면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8조(운영경비의 집행) ②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조례의 제17조(구성 등) 6항에 의하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 주안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용내역을 증빙할 세금계산서를 첨부치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가름하였으며, 현금 지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함.

☞ 2014년 주민자치위원 정기적인 인적사항 공개를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였으며, 2014년도 신규위원 4명에 대하여도 위촉된후 즉시 (1개월이내) 공개하여야 하나 수개월이 경과한후 공개

➡ **처분요구 :**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회계 집행시 관련 지출 증빙자료 첨부 및 주민자치위원 공개 지연 등 사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처리 할 것(주의)

◆ 가족관계 등록신고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및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에 의하면 출생 및 사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법 제122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해태기간이 7일 미만이면 10,000원, 7일이상 1월미만이면 20,000원, 1월이상 3월미만이면 30,000원 3월이상 6월미만은 40,000원, 6월 이상이면 5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 주안3동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처리 하면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착오 계산하여 잘못 부과함

➡ 처분요구 :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과징수액 환급조치(환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인증 부정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성명변경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분실)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안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 2명(부실)에 대하여 근거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징수하지 않았으며, 징수대상 2명(분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착오 인증함



처분요구 :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인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4인에게 수수료 추가 징수하여 인증할 것(추징)

◆ 인력동원영장 수불부 관리 소홀

- 인력동원업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영장보관기관에서는 영장보관 및 배부에 따른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급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동원담당 기관장 및 담당직원의 전출·입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영장 수불 현황 및 보관상태(봉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인계·인수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여 이상유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결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주안3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 2. 28일 이후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자가 변경 되었음에도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 인력훈련 통지서, 인력동원영장 통지서」 관리대장 등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함



처분요구 : 인력동원업무편람의 『동원영장 보관 및 관리』 요령에 따라 인력동원영장 수불부의 인력동원담당 기관장 변경에 따른 영장수불 현황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인계·인수 절차 이행 등 이상 유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결재를 반드시 필할 것(시정)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201-01)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가 있으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 주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인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는 강사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관련 기준에 맞는 항목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 가능한 커피, 차류 등을 구입.

➡ **처분요구 :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주의)**

◆ 경로행사에 따른 회계집행 부적정

-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며,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또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4. 인천광역시남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12 ~ 2014년도 경로잔치 행사비 집행시 동 사업은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조금 대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 새마을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에 행사비를 지급하여 집행함

➡ 처분요구 :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 집행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말소된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소홀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해야 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 통지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 주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상태호전으로 인한 등급외말소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20명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음

➡ 처분요구 : 사망 등으로 장애등록 취소된 대상자의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를 회수하고, 장애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통지서를 송달하기 바람(시정)

◆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결과통보 미이행

-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34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애등급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주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1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심사 결과 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대상자에게 장애등급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처분요구 :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주의)

◆ 등록장애인 재판정 미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에 따르면 장애인등록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인 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 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며,(판정 촉구)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직권으로 장애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인 6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재판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처분요구 :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시정)